

뉴욕 요양원 전환 및 대안화
(NURSING HOME TRANSITION AND DIVERSION, NHTD)
프로그램 관련 집단 소송에 대한 합의 제안 통지

이 통지문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는?

귀하가 *Bagley v.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Bagley 대 뉴욕주 보건부)* 집단 소송의 합의에 영향을 받는 집단 소송 구성원(집단 소송의 일원)인 경우에는 이 통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단 소송 구성원(Class Member)입니다.

- (1) 뉴욕시 거주자이면서,
- (2) 2012년 8월 18일 이후 어느 시점이든
- (3) 지역사회 기반 장기 요양 서비스를 후원하는 Medicaid 보장의 수혜자였거나 현재 수혜자이고
- (4) 18세 이상이고
- (5) 뉴욕시에서 NHTD 면제 프로그램(NHTD Waiver Program) 서비스에 신청했거나, 신청 중이거나, 또는 법원에서 화해 합의(Settlement Agreement)를 승인한 후 3년의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
- (6) 입원 상담 단계에서 NHTD 면제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또는
- (7) 아마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으나 그 뒤에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 받지 않고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경우, 그리고
- (8) NHTD 면제 프로그램에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경우

이 통지문의 내용은?

이 통지는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 합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 NHTD 면제 프로그램에 관한 집단 소송(‘소송’)이 *Bagley et al. v.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et al. (Bagley 외 v. 뉴욕주 보건부 외)*라는 명칭으로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본 소송에서의 혐의는, 무엇보다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가 뉴욕시 NHTD 면제 프로그램을 자격이 있는 신청자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설계하고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DOH는 당국이 부적절하게 활동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들과 DOH는 현재 모든 집단 소송 구성원에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합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 합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법원이 승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합의안은 신청자들과 소통을 개선하고, NHTD 프로그램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신청 절차를 빠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의는 무엇보다도 다음 사항이 요구됩니다.

- NHTD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교육
- 집단 소송 구성원, 요양원 거주자, 요양원 운영자와 퇴원 계획자 등에게 NHTD 면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신청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요청 시, 뉴욕시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 큰 활자, 점자, 또는 접근 가능한 전자 형식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서면 통지
- 신청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안내된 거부 통지서 정보
- 신청자와 서비스 코디네이터가 아파트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주거 전문가 고용
- NHTD 프로그램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Medicare 및 Medicaid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승인을 받아, 서비스 조정 기관(Service Coordination Agencies)이 신청자를 돕는 인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보상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승인 노력
- 신청자가 더 효율적으로 거주지를 옮겨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NHTD 프로그램과 오픈 도어 프로그램(Open Doors Program) 사이의 조정을 강화
- NHTD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 신청자들을 위해 뉴욕시 NHTD 면제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지원 강화

변경 사항은 NHTD 면제 프로그램 설명서의 새로운 버전에 반영될 예정이고, 프로그램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과 일반 대중들은 DOH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통지문은 합의안의 간략 요약일 뿐입니다. 전체 합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합의안은 본 웹사이트 <https://mobilizationforjustice.org/nhtd/>에 있습니다. 합의안을 구하시려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집단 소송 구성원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서신, 또는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연락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Mobilization for Justice
110 William Street, 6th Floor
New York, NY 10038
Phone: 212-417-3700
Fax: 212-417-3891
nhtdclass@mfjlegal.org

또는

Patterson Belknap Webb & Tyler LLP
1133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36
Phone: 212-336-2000
Fax: 212-336-2222
nhtdclass@mfjlegal.org

면책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면, DOH는 소송으로 이어졌던 사건과 관련하여 선언적 구제, 금지 명령 또는 기타의 형평적 구제에 대한 더 이상의 책임에서 면책됩니다. 이것은 귀하가 합의안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NHTD 면제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한 사건으로 DOH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귀하는 합의 조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합의를 승인하기 전에 법원은 ‘공정 심리’를 개최하여 있을 수 있는 반대 이유를 경청할 것입니다.

합의안에 동의할 경우,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합의안에 동의하시면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합의를 승인하는 경우, 상기 설명된 조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도 합의에 대해 구속력이 있습니다.

합의안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합의안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합의에 관한 이의 제기 또는 의견을 담아, “**Bagley Settlement**” (**Bagley 합의**)로 표기한 서신이나 기타 서면 진술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 및 합의안에 반대하는 모든 이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신을 **[insert date from Order]** 당일까지 또는 그 이전에 법원 서기관(Clerk of the Court)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우편 송부하는 경우 **[insert from Order]** 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서신의 사본을 Patterson Belknap Webb & Tyler LLP 또는 집단 소송 구성원의 변호사인 Mobilization for Justice로도 보내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우편 주소는 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Clerk of the Court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ew York 11201**

2. 공정 심리(Fairness Hearing) 개최일에(아래 참조) 법원으로 오셔서 판사에게 귀하의 의견 및/또는 이의 제기에 관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공정 심리 담당 판사: Frederic Block, 장소: United States District Courthouse, 225 Cadman Plaza East, Brooklyn, New York, 10층에 있는 Courtroom 10C South, 날짜: _____, 2024, 시간: _____. 의견 개진을 원치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했거나 의견을 개진하셨다면, 공정 심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집단 소송 구성원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본 통지문은 뉴욕주 보건부 웹사이트에서 아랍어, 벙골어, 미얀마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크레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네팔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우르두어, 이디시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health.ny.gov/facilities/long_term_care/nhtd/resources/index.htm.